비슬원 급여이용 정보

1. 이용대상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,2등급과 3,4,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

2. 입소계약(비슬원 입소계약규정에 의함 - 입소계약서 작성시 계약규정 제공)

- 일반 입소자의 경우
  ※ 입소상담 → 입소결정 → 입소계약 → 입소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(관할관청 : 달성군청)
  ※ 입소상담 → 읍사무소 입소이용신청 → 입소이용의뢰서 등록 → 입소결정 → 입소계약 → 입소

3. 의료기관 이용절차

- 시설의 급여제공 : 수급자의 일반적인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보호자가 시설에 일임한 사항.
- 응급시 급여제공 : 수급자가 장기간 병원을 이용해야할 경우 보호자에게 일임함.
  ※ 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와 약제비는 개인 별도 부담

4. 시설물의 사용

- 입소계약규정 제2조(사용시설)에 따라 기구, 기타 조작물 및 식당, 욕실, 휴게실, 프로그램실, 기타 공용시설에 대하여는 입소자는 비슬원의 관리에 따라 공용하는 것으로 하며, 입소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손실이 생겼을 경우 보호자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5. 직원의 배치

직 종		원 장	사회복지사	간호조무사	요양보호사	조리원	위생원
배 치 인 원		1	2	1	13	3	2
근무 사항	평 일	주5일 근무제로 휴일에는 1명 근무			■주.야간근무제10명 ■주간근무제 3명	격일근무제2명 시간제근무제1명	파견근무 (일자리사업)
	휴 일						
근무 인원	07:00~18:00					1	
	09:00~18:00	1	2	1	4~6		2
	18:00~09:00				3		

6. 급여 및 비급여 이용료

○ 급여 사항 (단위 : 원)

등 급	1일 수가	합 계 (30일 기준)	공단 부담금			법적 본인 일부 부담금			
			일 반	경감대상(중위소득기준)		일 반 (20%적용)	경감대상		국민기초 수급권자
				(100%~51%)	(50%이하)		(12%적용)	(8%적용)	
1 등급	90,450	2,713,500	2,170,800	2,387,880	2,496,420	542,700	325,620	217,080	면제
2 등급	83,910	2,517,300	2,013,840	2,215,230	2,315,920	503,460	302,070	201,380	
3~5등급	79,240	2,377,200	1,901,760	2,091,940	2,187,030	475,440	285,260	190,170	

※ 급여 이용료에는 입소 시설 내에서의 간병·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, 요양관리, 간호, 기능훈련, 기타복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.

○ 비급여 사항 (단위 : 원)

항 목	1일기준	합 계	산 출 근 거
식재료비	7,200	240,000 (30일기준)	■월식단표(밥, 유동식, 국, 4찬 이상 / 조리실 앞 게시) ■요구에 따른 외부음식구입 및 특별식 제공시 - 실비정산 ■간식 일일 3회(오전, 오후, 저녁) 제공
간 식 비	800		
이·미용	실 비	실 비	■원내 자원봉사자 연계 시 무료제공, 외부미용실 이용시 실비정산
상급침실	해당없음	해당없음	■상급 침실 없음

7.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

항 목	가입처	가입금액	기 간	비고
요양시설배상책임보험	한국사회복지공제회	1사고당 5억원	2024.11.2.~2025.11.1.	음식물 3천/가스 8천
화재보험	현대해상화재보험	19억6천만원	2024.10.30~2027.10.29.	시설/집기/배상
승강기배상책임보험	현대해상화재보험	1인당 8천만원	2024.9.7.~2025.9.6.	승강기 사고 배상